

전남개발공사 노동자이사 공개모집 공고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통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간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며, 대도민 서비스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전남개발공사에서 업무수행 경험이 풍부하고 미래지향적 비전을 가진 노동자이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임용직위 및 인원 : 비상임이사(노동자이사) 1인

2.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3년

※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 임기와 관계없이 노동자이사 임기 종료

3. 응모자격 : ①과 ②를 동시에 충족한자

①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자 격 요 건 내 용

- 선거일(2025.6.18.) 현재 우리공사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이고, 잔여 정년이 3년 이상인 근로자
- 공고일(2025.6. 2.) 현재 선거권자의 10% 이상 추천을 받은 근로자

②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내 용

- 지방공기업법 제60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 사유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단체협약 제3조제2항에 의한 2급 이상 직급 및 처장 이상 직책에 임용된 직원, 감사업무 담당자, 노무·인사·후생복지·예산 담당자, 임원 부속실 직원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1. 미성년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주요직무 : 이사회 구성원으로 공사 경영 전반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 및 자문 수행

5. 직무수행요건(요구능력 수준)

구 분	직무수행요건
기본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에 대한 풍부한 학식과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경영·회계·예산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능력 -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예측 능력 - 대규모 조직의 인적·물적 자원 운영 경험 ●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소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경험·자질 - 이해관계자들의 여론수렴 능력 ● 공기업 임원으로서의 자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법성·도덕성 등 공기업 임원으로서 요구되는 윤리의무 준수 태도
고유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경험, 이해 및 식견이 풍부한 전문가 ● 최고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으로서의 경영 비전제시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 의사결정자로서의 정책결정 능력 - 경영환경 및 시대적 변화에 대한 적극적·능동적 대응 능력

6. 응모서류 접수

가. 접수기간 : '25. 6. 2.(월) ~ '25. 6. 9.(월)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경영지원처)

다. 제출서류

- 후보자 등록 신청서(사진부착), 입후보자 추천서 각 1부
-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
- 직무수행계획서(3매 이내 기술, 이상인 경우 1~2매 요약서 앞부분에 별첨), 전남 개발공사 임원결격사유 자가 점검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보유자에 한함) 각 1부

7. 심사방법 및 절차

가. 후보자 등록 확정 및 서류심사

- 후보자 등록 확정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노동자이사 후보자 등록 신청서 심사를 통해 후보자 확정
- 서류심사 :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나. 선거일 : 2025. 6. 18.(수)

* 일정상 변경될 수 있음

- 노동자이사 후보 선거에 관한 사항(선거결과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 공고

다. 인터뷰(약식) : 임원추천위원회 비상임이사 면접 시 진행

- 대상자 : 노동자이사 후보 선거를 거쳐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된 자

라. 합격자(최종 추천자) 발표 : 공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

8. 기타사항

가. 노동자이사는 관계법령, 조례, 정관으로 정하는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갖게 되며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비상임이사에게 부과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나. 노동자이사로 임명 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거 조합원 신분유지는 불가합니다.

다. 노동자이사로서의 직무수행에 따른 보수 및 수당 지급은 없습니다.

- 라. 모집결과 응모자가 결원예정직위 2배수에 미달될 경우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 마. 재공고 하였음에도 2배수에 미달한 경우, 선거권자 총 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유효 득표한 자를 추천할 수 있음

※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유효투표수의 과반수의 득표

- 바. 임원추천위원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임명권자가 임원후보 재추천을 요구할 경우에는 후보자 모집을 다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사. 신청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허위 기재, 제출서류 미제출 또는 기재사항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달자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임용된 경우에도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임용을 취소합니다.
- 아. 기타 문의사항은 경영지원처(061-280-06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2일

전남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